#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(약칭: 인공지능기본법)



[시행 2026. 1. 22.] [법률 제20676호, 2025. 1. 21., 제정]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(인공지능기반정책과) 044-202-6275

##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인공지능"이란 학습, 추론, 지각, 판단,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.
- 2. "인공지능시스템"이란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과 적응성을 가지고 주어진 목표를 위하여 실제 및 가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, 추천, 결정 등의 결과물을 추론하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을 말한다.
- 3. "인공지능기술"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·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.
- 4. "고영향 인공지능"이란 사람의 생명,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활용되는 것을 말한다.
  - 가.「에너지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의 공급
  - 나. 「먹는물관리법」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의 생산 공정
  - 다. 「보건의료기본법」제3조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의 구축・운영
  - 라.「의료기기법」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및「디지털의료제품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디지털의료기기의 개발 및 이용
  - 마. 「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」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핵물질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원자력시설의 안전한 관리 및 운영
  - 바. 범죄 수사나 체포 업무를 위한 생체인식정보(얼굴·지문·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·생리적·행동적 특징에 관한 개인정보를 말한다)의 분석·활용
  - 사. 채용, 대출 심사 등 개인의 권리 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
  - 아. 「교통안전법」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교통수단, 교통시설, 교통체계의 주요한 작동 및 운영
  - 자.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격 확인 및 결정 또는 비용징수 등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(이하 "국가기관등"이라 한다)의 의사결정
  - 차. 「교육기본법」제9조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서의 학생 평가
  - 카. 그 밖에 사람의 생명・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역
- 5. "생성형 인공지능"이란 입력한 데이터(「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 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하여 글, 소리, 그림, 영상, 그 밖의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인공지 능시스템을 말한다.
- 6. "인공지능산업"이란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(이하 "인공지능제품"이라 한다)을 개발・제조・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비스(이하 "인공지능서비스"라 한다)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.
- 7. "인공지능사업자"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, 단체, 개인 및 국가기관등을 말한다.
  - 가. 인공지능개발사업자: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자
  - 나. 인공지능이용사업자: 가목의 사업자가 제공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는 자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- 8. "이용자"란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.
- 9. "영향받는 자"란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에 의하여 자신의 생명,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 자를 말한다.
- 10. "인공지능사회"란 인공지능을 통하여 산업·경제, 사회·문화,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.
- 11. "인공지능윤리"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, 국민의 권익과 생명·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개발, 제공 및 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말한다.

[시행일: 2026. 1. 24.] 제2조제4호라목 중 디지털의료기기에 관한 부분

- **제3조(기본원칙 및 국가 등의 책무)** ① 인공지능기술과 인공지능산업은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.
  - ② 영향받는 자는 인공지능의 최종결과 도출에 활용된 주요 기준 및 원리 등에 대하여 기술적·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명확하고 의미 있는 설명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.
  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사업자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,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 -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사회・경제・문화와 국민의 일상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의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국민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제4조(적용범위) ①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
  - ② 이 법은 국방 또는 국가안보 목적으로만 개발ㆍ이용되는 인공지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**제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** ① 인공지능, 인공지능기술, 인공지능산업 및 인공지능사회(이하 "인공지능등"이라 한다)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  - ② 인공지능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

## 제2장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

- 제6조(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제7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・의결을 거쳐 수립・변경 및 시행하여야 한다. 다만,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1. 인공지능등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
  - 2.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인공지능 개발・활용 촉진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
  - 3. 인공지능윤리의 확산 등 건전한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법ㆍ제도 및 문화에 관한 사항
  - 4.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보와 투자의 방향 등에 관한 사항
  - 5. 인공지능의 공정성・투명성・책임성・안전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
  - 6.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방향 및 그에 따른 교육・노동・경제・문화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
  - 7.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제협력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 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제6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.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(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⑤ 기본계획은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부문별 추진계획으로 본다.
-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⑦ 기본계획의 수립・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7조(국가인공지능위원회) 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 -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고, 특정 성(性)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.
  -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, 부위원장은 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
  -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  - 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
  - 2. 국가안보실의 인공지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차장
  - 3. 대통령비서실의 인공지능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는 수석비서관
  - 4. 인공지능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
  -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  -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  - ⑦ 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.
  - ⑧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, 간사위원은 제4항제3호의 위원이 된다.
  - ⑨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- ⑩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 - ⑪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- ①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원단을 둔다.
  - ③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.
  - ④ 그 밖에 위원회와 제12항에 따른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제8조(위원회의 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• 의결한다.

- 1. 기본계획의 수립・변경 및 시행의 점검・분석에 관한 사항
- 2. 인공지능등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
- 3. 인공지능등에 관한 연구개발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
- 4. 인공지능등에 관한 투자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
- 5. 인공지능산업 발전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의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
- 6. 인공지능 데이터센터(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제40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센터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등 인프라 확충 방안에 관한 사항
- 7. 제조업 서비스업 등 산업부문 및 공공부문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
- 8. 인공지능 국제규범 마련 등 인공지능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
- 9. 제2항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에 관한 사항
- 10. 고영향 인공지능 규율에 관한 사항
- 11.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된 사회적 변화 양상과 정책적 대응에 관한 사항
- 12.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
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
- 13.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- ② 위원회는 국가기관등의 장 및 인공지능사업자 등에 대하여 인공지능의 올바른 사용과 인공지능윤리의 실천, 인공지능기술의 안전성·신뢰성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법령·제도의 개선 또는 실천방안의 수립 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한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령·제도 등의 개선방안과 실천방안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제9조(위원의 제척・기피 및 회피) ①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・의결에서 제척(除斥)된다.
  - 1.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  - 2. 위원의 가족(「민법」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)이 이해관계인인 경우
  - ②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(당사자가 법인·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)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위원회는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의결로 기피를 결정하여야 한다.
  -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.
- **제10조(분과위원회 등)**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 분야별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 - ② 위원회는 인공지능등 관련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 - ③ 위원회는 인공지능등 관련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.
  - ④ 그 밖에 분과위원회, 특별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1조(인공지능정책센터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과 국제규범 정립·확산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정책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를 지정할 수 있다.
  -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  - 1. 기본계획의 수립 · 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
  - 2. 인공지능과 관련한 시책의 개발 및 관련 사업의 기획 · 시행에 관한 전문기술의 지원
  - 3. 인공지능의 활용 확산에 따른 사회, 경제, 문화 및 국민의 일상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 분석
  - 4.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동향 분석 , 사회·문화 변화와 미래예측 및 법·제 도의 조사·연구
  - 5. 다른 법령에서 센터의 업무로 정하거나 센터에 위탁한 사업
  - 6. 그 밖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
  - ③ 그 밖에 센터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2조(인공지능안전연구소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 등을 보호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상태(이하 "인공지능안전"이라 한다)를 확보하기 위한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안전연구소(이하 "안전연구소"라 한다)를 운영할 수 있다.
  - ② 안전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  - 1. 인공지능안전 관련 위험 정의 및 분석
  - 2. 인공지능안전 정책 연구
  - 3. 인공지능안전 평가 기준・방법 연구
  - 4. 인공지능안전 기술 및 표준화 연구
  - 5. 인공지능안전 관련 국제교류 국제협력
  - 6. 제32조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지원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

- 7. 그 밖에 인공지능안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- ③ 정부는 안전연구소의 운영과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
- ④ 그 밖에 안전연구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# 제3장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

제1절 인공지능산업 기반 조성

- 제13조(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) ① 정부는 인공지능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  - 1.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동향 수준 및 관련 제도의 조사
  - 2. 인공지능기술의 연구·개발, 시험 및 평가 또는 개발된 기술의 활용
  - 3. 인공지능기술 확산, 인공지능기술 협력 이전 등 기술의 실용화 및 사업화 지원
  - 4. 인공지능기술의 구현을 위한 정보의 원활한 유통 및 산학협력
  - 5.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연구·조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  - ② 정부는 인공지능기술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  - 1.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제6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인공지능기술로 구현하는 연구개발 사업
  - 2.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제60조제3항에 따른 비상정지 기능을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에서 구현하기 위한 기술 연구 지원 및 해당 기술의 확산을 위한 사업
  - 3. 인공지능기술의 개발에 있어서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제61조제2항에 따른 사생활등의 보호에 적합한 설계 기준 및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
  - 4. 인공지능기술의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제56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 영향평가의 실시와 적용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
  - 5. 인공지능이 인간의 존엄성 및 기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발·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또는 기준 등의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
  - 6. 인공지능의 안전한 개발과 이용을 위한 인식개선, 올바른 이용방법과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
  - 7. 그 밖에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,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
  -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의 결과를 누구든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기술을 개발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다.
- 제14조(인공지능기술의 표준화) ① 정부는 인공지능기술,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습용데이터, 인공지능의 안전성 · 신뢰성 등과 관련된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 - 1. 인공지능기술 관련 표준의 제정 개정 및 폐지와 그 보급
  - 2. 인공지능기술 관련 국내외 표준의 조사 연구개발
  - 3.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관련 표준화 사업
  - ② 정부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제정된 표준을 고시하여 관련 사업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.
  - ③ 정부는 민간 부문에서 추진하는 인공지능기술 관련 표준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  - ④ 정부는 인공지능기술 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기구 또는 국제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・강화하여야 한다.
  - ⑤ 그 밖에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표준화 사업의 추진 및 지원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5조(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등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공지능의 개발・활용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(이하 "학습용데이터"라 한다)의 생산・수집・관리・유통 및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  - ② 정부는 학습용데이터의 생산·수집·관리·유통 및 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대 상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③ 정부는 학습용데이터의 생산·수집·관리·유통 및 활용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양한 학습용데이터를 제작·생산하여 제공하는 사업(이하 "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"이라 한다)을 시행할 수 있다.
-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학습용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제공·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(이하 "통합제공시스템"이라 한다)을 구축·관리하고 민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.
-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제공시스템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.
- ⑥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,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시행,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·관리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제2절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활성화

- 제16조(인공지능기술 도입·활용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촉진 및 활용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  - 1. 인공지능기술,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개발 지원 및 연구・개발 성과의 확산
  - 2. 인공지능기술을 도입・활용하고자 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컨설팅 지원
  - 3.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,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및 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(이하 "중소기업등"이라 한다)의 임직원에 대한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 관련 교육 지원
  - 4. 중소기업등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에 사용되는 자금의 지원
  - 5. 그 밖에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  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**제17조(중소기업등을 위한 특별지원)** ① 이 법에 따라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과 관련한 각종 지원시책을 시행할 때에는 중소기업등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.
  - ② 정부는 인공지능산업에 대한 중소기업등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  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등의 제34조에 따른 조치 이행 및 제35조에 따른 영향평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8조(창업의 활성화) ① 정부는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

- 1.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자 발굴 및 육성・지원 등에 관한 사업
- 2.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훈련에 관한 사업
- 3. 제21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우수 인공지능기술에 대한 사업화 지원
- 4. 인공지능기술의 가치평가 및 창업자금의 금융지원
- 5. 인공지능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성과의 제공
- 6.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 단체의 육성
- 7.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
- ②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등 공공단체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.
- 제19조(인공지능 융합의 촉진) ① 정부는 인공지능산업과 그 밖의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고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  - ② 정부는 인공지능 융합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인공지능 융합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연구개발과제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.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개발된 인공지능 융합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는 「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」제37조에 따른 임시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.
- 제20조(제도개선 등) ① 정부는 인공지능산업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하여 법령의 정비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-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·제도의 연구 및 사회 각계의 의견수렴 등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21조(전문인력의 확보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「지능 정보화 기본법」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.
  - ② 정부는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해외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.
  - 1.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해외 대학・연구기관・기업 등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・분석
  - 2.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를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
  - 3. 해외 전문인력의 국내 취업 지원
  - 4. 국내 인공지능 연구기관의 해외진출 및 해외 인공지능 연구기관의 국내 유치 지원
  - 5.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행사의 국내 유치 지원
  - 6. 그 밖에 해외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제22조(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) ① 정부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.
  - ② 정부는 인공지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산업에 종사하는 개인·기업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  - 1.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보・기술・인력의 국제교류
  - 2. 인공지능산업 관련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
  - 3. 국가 간 인공지능기술,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공동 연구・개발 및 국제표준화
  - 4. 인공지능산업 관련 외국자본의 투자유치
  - 5. 인공지능등 관련 해외 전문 학회 및 전시회 참가 등 홍보 및 해외 마케팅
  - 6.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수출에 필요한 판매체계・유통체계 및 협력체계 등의 구축
  - 7. 인공지능윤리에 관한 국제적 동향 파악 및 국제협력
  - 8.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  - ③ 정부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
  - 그 밖의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,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- 제23조(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인공지능 개발・활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의 연구·개발을 수행하는 기업, 기관이나 단체의 기능적·물리적·지역적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다.
  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집적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지 능집적단지(이하 "인공지능집적단지"라 한다)를 지정하여 행정적·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  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 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  - 2.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

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집적화를 지역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.
- ⑤ 정부는 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있다.
- ⑥ 그 밖에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지정 및 지정취소와 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설치 또는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4조(인공지능 실증기반 조성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사업자가 개발하거나 이전받은 기술의 실증, 성능시험, 제30조에 따른 검・인증등(이하 "실증시험등"이라 한다)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험, 평가 등에 필요한 시설・장비・설비 등(이하 "실증기반등"이라 한다)을 구축・운영할 수 있다.
  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증시험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실증기반등을 인공지능사업자에게 개방할 수 있다.
  - ③ 그 밖에 실증기반등의 구축 운영 및 개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**제25조(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시책의 추진 등)** ① 정부는 인공지능의 개발·활용 등에 이용되는 데이터센터(이하 "인공지능 데이터센터"라 한다)의 구축 및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  -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  - 1.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・재정적 지원
  - 2. 중소기업, 연구기관 등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이용 지원
  - 3.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인공지능 관련 인프라 시설의 지역별 균형 발전을 위한 지원
- 제26조(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의 설립) ① 인공지능등과 관련한 연구 및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인공지능의 개발·이용촉진, 인공지능산업 및 인공지능기술의 진흥, 인공지능등에 대한 교육·홍보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(이하 "협회"라 한다)를 설립하거나 협회로 지정받을 수 있다.
  -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.
  -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- 1. 인공지능기술,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 촉진 및 확산
  - 2. 인공지능등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 조사
  - 3. 인공지능사업자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・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등
  - 4. 인공지능사업자 및 인공지능 관련 전문인력의 해외진출 지원
  - 5.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활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
  - 6.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협회가 위탁받은 사업
  - 7.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
  -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협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
  - ⑤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, 협회의 업무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, 그 밖에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 -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.
  -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## 제4장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성 확보

제27조(인공지능 윤리원칙 등) ① 정부는 인공지능윤리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인공지능 윤리 원칙(이하 "윤리원칙"이라 한다)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・공표할 수 있다.

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

- 1. 인공지능의 개발·활용 등의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과 신체, 정신적 건강 등에 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안전성 과 신뢰성에 관한 사항
- 2. 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제품・서비스 등을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에 관한 사항
- 3. 사람의 삶과 번영에의 공헌을 위한 인공지능의 개발 활용 등에 관한 사항
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윤리원칙이 인공지능의 개발·활용 등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에 의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실천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 및 홍보·교육하여야 한다.
- ③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공지능윤리기준(그 명칭 및 형태를 불문하고 인공지능윤리에 관한 법령, 기준, 지침, 가이드라인 등을 말한다)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윤리원칙 및 제 2항에 따른 실천방안과의 연계성·정합성 등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할 수 있다.

제28조(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의 설치 등) ①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는 윤리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민간 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(이하 "민간자율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- 1. 인공지능기술 연구 및 개발을 수행하는 사람이 소속된 교육기관 연구기관
- 2. 인공지능사업자
- 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기술 관련 기관
- ② 민간자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한다.
- 1. 인공지능기술 연구・개발・활용에 있어서 윤리원칙의 준수 여부 확인
- 2. 인공지능기술 연구ㆍ개발ㆍ활용의 안전 및 인권침해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
- 3. 인공지능기술 연구·개발·활용의 절차 및 결과에 관한 조사·감독
- 4.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연구자 및 종사자에 대한 윤리원칙 교육
- 5. 인공지능기술 연구・개발・활용에 적합한 분야별 인공지능윤리 지침 마련
- 6. 그 밖에 윤리원칙 구현에 필요한 업무
- ③ 민간자율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. 다만, 그 구성을 특정한 성(性)으로만 할 수 없으며, 사회적·윤리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및 그기관 또는 단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각각 포함하여야 한다.
-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자율위원회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구성·운영을 위하여 표준 지침 등을 마련하여 보급할 수 있다.

**제29조(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의 마련)** 정부는 인공지능이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인공지능의 이용을 위한 신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- 1.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환경 조성
- 2. 인공지능의 이용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전망과 예측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정비
- 3. 인공지능의 안전성 신뢰성 확보를 위한 안전기술 및 인증기술의 개발 및 확산 지원
- 4.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 구현 및 인공지능윤리 실천을 위한 교육・홍보
- 5. 인공지능사업자의 안전성 신뢰성 관련 자율적인 규약의 제정 시행 지원
- 6. 인공지능사업자, 이용자 등으로 구성된 인공지능 관련 단체(이하 "단체등"이라 한다)의 인공지능의 안전성 · 신뢰 성 증진을 위한 자율적인 협력, 윤리지침 제정 등 민간 활동의 지원 및 확산
- 7. 그 밖에 인공지능의 안전성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제30조(인공지능 안전성·신뢰성 검·인증등 지원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단체등이 인공지능의 안전성·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검증·인증 활동(이하 "검·인증등"이라 한다)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- 1. 인공지능의 개발에 관한 가이드라인 보급
- 2. 검 · 인증등에 관한 연구의 지원

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

- 3. 검 · 인증등에 이용되는 장비 및 시스템의 구축 · 운영 지원
- 4. 검 · 인증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
- 5. 그 밖에 검ㆍ인증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검·인증등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③ 인공지능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을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검 인증등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기관등이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검·인증등을 받은 인공지능에 기반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- 제31조(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)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해당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.
  - ②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.
  - ③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,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결과물이 예술적·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수 있다.
  -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전고지, 제2항에 따른 표시, 제3항에 따른 고지 또는 표시의 방법 및 그 예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**제32조(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)**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인공지능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  - 1. 인공지능 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위험의 식별 평가 및 완화
  - 2. 인공지능 관련 안전사고를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위험관리체계 구축
  - ② 인공지능사업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이행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구체적인 이행 방식 및 제2항에 따른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
- 제33조(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)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·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인공지능이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.
  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자문을 받을 수 있다.
  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영향 인공지능의 기준과 예시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보급할 수 있다.
  -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34조(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)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・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고영향 인공지능의 안전성・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.
  - 1. 위험관리방안의 수립 운영
  - 2.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의 인공지능이 도출한 최종결과, 인공지능의 최종결과 도출에 활용된 주요 기준, 인공지능의 개발·활용에 사용된 학습용데이터의 개요 등에 대한 설명 방안의 수립·시행
  - 3. 이용자 보호 방안의 수립 운영

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

- 4.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사람의 관리·감독
- 5. 안전성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의 작성과 보관
- 6. 그 밖에 고영향 인공지능의 안전성 ·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 · 의결된 사항
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,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- ③ 인공지능사업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준하는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- **제35조(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)** ① 인공지능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사람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(이하 "영향평가"라 한다)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 - ② 국가기관등이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실시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  - ③ 그 밖에 영향평가의 구체적인 내용・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**제36조(국내대리인 지정)**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인공지능사업자로서 이용자 수,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(이하 "국내대리인"이라 한다)를 서면으로 지정하고,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  - 1. 제32조제2항에 따른 이행 결과의 제출
  - 2. 제33조제1항에 따른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확인의 요청
  - 3.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성·신뢰성 확보 조치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(같은 항 제5호에 따른 문서의 최신성·정확성에 대한 점검을 포함한다)
  -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.
  - ③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인공지능사업자가 그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.

## 제5장 보칙

- 제37조(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충 등) ① 국가는 기본계획 및 이 법에 따른 시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  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  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등 민간이 적극적으로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  -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의 발전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38조(실태조사, 통계 및 지표의 작성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 및 인공지능등 관련 시책과 사업의 기획·수립·추진을 위하여 국내외 인공지능등에 관한 실태조사, 통계 및 지표를 「과학기술기 본법」 제26조의2에 따른 통계와 연계하여 작성·관리하고 공표하여야 한다.
  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및 지표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  -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, 통계 및 지표의 작성 관리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39조(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・광역시장・특별자치시장・도지사・특별자

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

치도지사(이하 이 조에서 "시·도지사"라 한다)에게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)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.

-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- 1. 제13조에 따른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이용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
- 2.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습용데이터의 생산・수집・관리・유통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원대상사업의 선정・지원과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추진
- 3.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・운영 및 관리
- 4. 제18조에 따른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5. 제30조제2항에 따른 검 인증등 관련 지원
- 6. 제38조에 따른 실태조사, 통계 및 지표의 작성
- 7.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인공지능윤리의 확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

제40조(사실조사 등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,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.

- 1. 제31조제2항·제3항, 제32조제1항·제2항 또는 제34조제1항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 게 된 경우
- 2. 제31조제2항・제3항, 제32조제1항・제2항 또는 제34조제1항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
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공지능사업자의 사무소・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・서류,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조사의 내용・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「행정조사기본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공지능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인공지능사업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- **제41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**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「형법」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  - ② 제3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「형법」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 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## 제6장 벌칙

**제42조(벌칙)** 제7조제9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제43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- 1.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지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
- 2.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
- 3. 제40조제3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-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・징수한다.

부칙 <제20676호,2025. 1. 21.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조제4호라목 중 디지털의료기기에 관한 부분은 2026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

- 제2조(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)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 위원의 위촉, 분과위원회, 특별위원회, 자문단 및 지원단의 구성 등은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.
- 제3조(전담기관에 관한 특례) 이 법 시행 당시 제23조제1항에 따른 집적화를 지역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관련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 중인 기관 중 조직,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기관은 제 2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.

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